

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 서류 안내

수급자격 인정요건	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로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■ 폐업 사유가 인정 사유에 해당할 것 ■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폐업사유	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 ※ 단, 가맹점주의 법령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·시정 미이행,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형사처벌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이 해지(갱신거부)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불인정
준비서류	☐ 폐업사실 증명원(국세청): 폐업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☐ 고용보험 상실처리(근로복지공단) ☐ 고용보험 완납증명서(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토탈서비스, 무인민원발급기) ☐ <u>폐업 사유 확인 서류</u> ○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통지서 또는 갱신거부 통지서 - 상세 사유 확인 필요
※ 필요시, 추가서류 요청이 가능합니다. ※ 진주고용센터 팩스: 0508-8230-0475  진주 고용복지+센터	